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4172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관영

4. D

5.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변론 종결 2022. 10. 20.

판결 선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336,066원 및 그중 421,447,446원에 대하여 2021. 5. 4.부터 2021. 8. 2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8. 24. 및 2020. 9. 14.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8. 24. 접수 제1105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20. 9. 28. 접수 제127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20. 1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12. 16. 접수 제1585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21. 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1. 7. 접수 제17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기간을 2016. 4. 14.부터 2017. 4.

13.까지(이후 2021. 4. 9.까지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원금을 368,000,000원,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역삼역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기간을 2020. 4. 27.부터 2025. 4. 25.까지, 신용보증원금을 56,666,440원,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역삼역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4)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교부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460,000,000원을,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교부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66,666,4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연체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21. 1. 26.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21. 5. 4. F은행에 총 421,447,446원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채권보전비용이 현재 2,870,730원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17,89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B은 피고 C(피고 B와 형제관계이다), D,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	2020. 8. 24.	2020. 8. 24.	피고 C	280,000,000
2	2020. 9. 14.	2020. 9. 28.	피고 C	150,000,000
3	2020. 12. 15.	2020. 12. 16.	피고 D	200,000,000
4	2021. 1. 6.	2021. 1. 7.	피고 E	1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336,066원(대위변제금 421,447,446원 + 채권보전비용 2,870,730원 + 위약금 17,8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21,447,44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1.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8. 24.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1. 1. 26. 원고의 사전구상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라 한다)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호증, 을라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점, ② 피고 회사는 2019년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약 26% 정도의 매출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에 이르렀고 2020년 하반기에도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약 57% 정도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는 약 4~5개월 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는 약 1개월 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는 20일 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상태

1)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0호증, 을다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1번 부동산	774,230,000
2	별지 목록 2번 부동산	251,771,760
3	별지 목록 1번 부동산 지상 미등기 건물 139/239 지분	30,447,630
4	세종시 G 임야 66/6298 지분세종시 H 임야 66/6298 지분세종시 I 임야 66/6298 지분	16,960,000
5		
6		
7	피고 회사의 주식 24,000주	120,000,000
합계	1,193,409,390	

2)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8, 16 내지 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조합, 주식회사 F, K기관, L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20. 8. 24. 기준,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20. 12. 15. 기준 각 피고 B의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표 중 순번 14번 M에 대한 채무는 2020. 11. 10., 순번 15번 N에 대한 채무는 2020. 12. 15. 각 발생하였다).

1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0,000	1,806,843,9061) 순번 1번 내지 13번 채무액의 합계	2,422,271,9062) 순번 1번 내지 15번 채무액의 합계
2	J조합에 대한 물상보증채무	552,938,508		
3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421,447,446		
4	주식회사 F에 대한 보증채무	253,199,952		
5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채무	22,640,000		
6	주식회사 P에 대한 현금서비스 채무	8,662,000		
7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1,418,000		
8	주식회사 Q에 대한 보증채무	100,000,000		
9	L보증보험에 대한	10,000,000		

1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0,000	1,806,843,9061) 순번 1번 내지 13번 채무액의 합계	2,422,271,9062) 순번 1번 내지 15번 채무액의 합계
	보증채무			
10	주식회사 R에 대한 보증채무	11,538,000		
11	S에 대한 채무	75,000,000		
12	피고 D에 대한 채무	200,000,000		
13	피고 E에 대한 채무	100,000,000		
14	M에 대한 채무	200,000,000		
15	N에 대한 채무	52,000,000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총 1,193,409,390원인 반면, 피고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20. 8. 24. 기준으로 1,806,843,906원,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20. 12. 15. 기준으로 2,422,271,906원으로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법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E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C,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20. 7. 8.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나 피고 B의 채권자인 S가 우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함에 따라 2020. 8. 12. 위 2020. 7.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시 말소하였다가 2020. 8. 24. 곧바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점, 피고 C이 피고 B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이 2020. 7. 8. 별지 목록 부동산 및 남양주시 T 지상 U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20. 8.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S가 2020. 8. 12. 채권최고액 11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피고 C이 별지 목록 부동산 및 남양주시 T 지상 V동, U동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인 2020. 8. 27.부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20. 9. 25.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총 77,238,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순위가 다른 점 이외에도 공동담보물건과 채권최고액을 달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C이 피고 B에게 2020. 8. 27.부터 2020. 9. 25.까지의 기간 동안 송금한 돈이 피고 B의 채무 변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융통된 자금이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 C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B에 대한 채권 잔액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 당시 약 2억 5천만 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 당시 약 3억 3천만 원 남아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C이 갖는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C이 친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 변제력 확보를 위한 신규 자금 융통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존속과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 D으로부터 2020. 8. 18. 2억 원, 2020. 11. 22. 3천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영업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D의 2020. 8. 18.자, 2020. 11. 22.자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피고 D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피고 E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20. 2.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피고 E는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E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피고 E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E는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준서

판사김진하

판사이승훈

별지

1) 순번 1번 내지 13번 채무액의 합계

2) 순번 1번 내지 15번 채무액의 합계